

인천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나650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결 2020. 3. 24.

판결 선고 2020. 4. 14.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소5346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B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최초 소유자로 C(C, 이하 이름은 확인 불가, 연월일 및 주소 기재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63. 12. 2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196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5. 10.

충부지방산림관리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D로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공매'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은 2001.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인 F은 2008. 11.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각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망인의 부친)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이를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1963. 12. 30. 귀속재산처리법을 위반하여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불법적으로 피고 소유로 귀속시켰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자, 망인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공매대금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 대한 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문).

그리고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최초 소유자로 이름불상의 C씨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C씨는 일응 일본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바(국내에 C라는 성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이후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인 재산으로서 앞서 본귀속재산처리 법령에 따라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피고에게 그에 관한 권리가 이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63. 12. 30. 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망인이 1934년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소유 및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망인이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나 원고의 조부(이하 망인 및 원고의 조부를 통칭하여 '망인 등'이라 한다)가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 등의 위 소유권 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을 선행하여 망인 등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 등이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문이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하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피고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문은 6·25 전쟁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은 물론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내에 존재하는 일본인 소유 재산까지도 귀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56.12. 31. 법률 제427호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지, 같은 조 제1문에 따라 이미 귀속재산으로 되었던 북위 38도선 이남에 존재하는 일본인 소유 재산을 귀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분명하다. 따라서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내에 존재하는 일본인 소유 재산만이 귀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 등이 이 사건 공매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임진수, 판사 신정수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0. 3. 31.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등이 이 사건 공매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위 권리를 전부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